

제291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2022. 10. 21.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미 래 · 복 지 위 원 회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2년 10월 21일  
전문위원 권 오 숙

##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2022 - 81
- 나. 발 의 자: 이종숙 의원 외 8명
- 다. 발의일자: 2022년 9월 26일
- 라. 회부일자: 2022년 10월 11일

## 2. 제안이유

현재 가사서비스 시장은 대부분 직업소개소나 사인, 모바일 플랫폼 등을 매개로 한 비공식 영역에 머물러 있어 가사서비스의 품질 보증과 가사근로자의 보호에 미흡한 측면에 있음. 이에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 가사서비스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 가사서비스와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 나. 용어의 정의와 적용대상,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2조~제4조)
- 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6조, 안 제7조)
- 라. 가사근로자의 노동권익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 조성을 위한 사업을 규정함 (안 제8조)
- 마. 위탁근거를 규정함 (안 제9조)
- 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관련 사항 심의자문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동자 권익보호위원회에서 대행함 (안 제10조)
- 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 (안 제11조)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7조
- 2)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6조, 제15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해당부서: 일자리정책과

라. 기 타: 입법예고(2022. 10. 6. ~ 10. 12.) 결과 의견 없음

## 5. 검토의견

### 가. 제정취지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2022. 6. 16.)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사근로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나. 주요 제정내용

-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및 적용대상에 대하여 정의하고**

#### ※ 용어의 정의

- **가사서비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법 제7조에 따른 인증을 받고 강서구 관내에 주소를 두고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 **가사근로자:**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 **적용대상:**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거주하거나 제2조제2항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된 가사근로자

-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sup>1)</sup>를 규정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1) 구청장의 책무: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 권익향상, 쾌적한 노동환경, 일자리 창출 등

-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안 제8조와 안 제9조는 가사근로자의 노동권익 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과 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안 제10조에서는 가사근로자 정책 등의 심의·자문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동자 권익보호위원회<sup>2)</sup>의 역할을 명시함

####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그동안 근로계약과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던 가사근로자에 대한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2)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동자 권익보호위원회

- 근거: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 구성: 15명 이내 (위원장1, 부위원장1 포함)
  - 소관 국장(당연직)
  - 강서구의회 의원
  - 노동분야 관련 전문지식이 있거나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 노동분야 정부기관, 노동단체, 비정규직과 여성을 포함하는 시민사회단체 근무 등 전문적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
- 임기: 2년 (1회에 한해 연임가능)
- 기능: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자문, 시행계획 이행여부 점검·평가, 노동인권 및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와 정책에 대한 자문 등

-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되면서 많은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보장받게 되었으나 가사노동자는 적용대상<sup>3)</sup>에서 배제되면서 노동자로서 인정받지 못한 채, 맞벌이 가구 증가 및 저출산·고령화로 가사 서비스 시장<sup>4)</sup>이 크게 확대되었고
- 이에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사 서비스 제공기관을 정부가 인증해 양질의 가사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2021.6.15.제정, 2022.6.16.시행]

■ ‘가사노동자’와 ‘가사근로자’의 구분

법 제정 이전에는 법 제정을 통한 노동자성의 인정을 위해 ‘가사노동자’라고 했지만, 현행 「근로기준법」과 사회보험제도 적용을 통한 가사근로자의 보호를 기본으로 하기 위해 ‘가사근로자’로 명칭함

3) 「근로기준법」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플랫폼 형태의 가사노동자(가사·청소·돌봄): 약 11만6천명

[출처: 플랫폼 종사자의 규모와 근무실태(2021), 한국고용정보원]

- 이처럼 가사근로자에 대한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가사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추세이며, 현재는 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조례가 시행중임<sup>5)</sup>
- 따라서 이번 조례 제정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진행하는 것이며, 선제적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가사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 및 복지향상과 더불어 가사근로자를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인식 개선을 도모하는 데 입법적 의의를 가지는 타당한 조례 제정으로 사료됨

5) 가사근로자 지원관련 조례 제정 현황

[2022년 9월 기준]

연번	지자체명	제정일	조례명
1	광주광역시	2021.07.23.	광주광역시 <u>가사근로자</u>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
2	충청남도	2021.09.30.	충청남도 <u>가사노동자</u>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	울산광역시	2021.12.29.	울산광역시 <u>가사근로자</u>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
4	서울특별시	2022.03.10.	서울특별시 <u>가사노동자</u> 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5	인천광역시	2022.04.21.	인천광역시 <u>가사근로자</u>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
6	경기도	2022.07.19.	경기도 <u>가사노동자</u>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사서비스”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란 제7조에 따른 인증을 받고 이 법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가사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이용계약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을 말한다.
4. “가사근로자”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입주가사근로자”란 가사근로자 중 이용자의 가구에 입주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 권익 향상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하여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가사근로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 제공
2. 가사근로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3. 가사근로자에 대한 고충처리, 상담 등 가사근로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인증을 받아야 한다.

1. 「민법」, 「상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일 것
2. 고용 인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사근로자를 유급 근로자로 고용(고용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활동을 할 것
3. 가사근로자가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수단을 갖추고 있을 것
4.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고충처리위원을 두는 경우를 포함하여 가사근로자가 불편사항이나 고충 등의 처리를 요청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고 있을 것
5. 그 밖에 운영 등의 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증 신청을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인증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이 법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④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인증받은 사항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하며,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이 법에 따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받지 아니한 기관은 이 법에 따라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라고 사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증심사 기준, 방법, 결과 통지 및 변경인증·변경신고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6조(노동정책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청장의 책무사항을 포함하여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동정책 기본 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노동 관련 조사·연구 및 노동교육 실시
5. 그 밖에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동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자문
2.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자문
3.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평가
4. 노동인권 및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정책에 대한 자문
5. 그 밖에 노동자권리보호를 위한 시책개발 및 운영에 대한 자문